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102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1. 3. 5

판결 선고 2021. 3. 26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8. 체결된근저당권설정
계 약을 취 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2020. 6. 9. 접수
제646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채 권
양도양수계 약을 취 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형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 부터 2020. 4. 20. 까지 주식회사 C에게 금형제작, 엘이디(LED)가로등, 경관조명기구 등 954,674,56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어음은 최종부도처리 되었다.

다. 피고는 2020. 6. 9.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 6. 9. 접수 제6460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금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주식회사 C은 2020.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78,392,951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17. 그 취지를 주식회사 D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준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주식회사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주식회사 D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수판사 박찬범판사 김태현

별지